

[별표 3] <개정 2007.8.7>

수수료(제67조제1항관련)

구 분	금 액
1.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	
-종합유선방송사업	20만원
-중계유선방송사업	10만원
2.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	20만원
3.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	
-방송채널사용사업	10만원
-전광판 방송사업, 음악유선방송사업	5만원
4.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	20만원
5.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	20만원
6.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	20만원
7.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	5만원
8.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, 변경승인, 변경등록	
-종합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	10만원
-중계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	5만원
-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등록	5만원
-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	10만원
-법 제9조제6항 및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변경승인	10만원
-전광판방송사업, 음악유선방송사업, 전송망사업의 변경등록	2만5천원
8의2.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	10만원
9.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	
-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	10만원
-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	2만5천원
10.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	10만원
11. 법 제7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 경한 경우의 준공검사 신청	
-종합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	
•설치 : 기본수수료(4채널까지)	40만원
•변경 : 기본수수료(4채널까지)	30만원
※추가수수료(1채널 추가시)	5만원
-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	
•설치 : 기본수수료(인입단자 1,000개 기준)	7만원
•변경 : 기본수수료(인입단자 1,000개 기준)	5만원
※추가수수료(인입단자 1,000개 추가시)	2만5천원
12.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	
-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검사	40만원
-중계유선방송사업의 검사	30만원